

수원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5040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法務法人 吉祥)

담당변호사 오범석

변 론 종 결 2022. 12. 13.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3. 16. 이루어진 재산분할협의를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11. 10. 접수 제249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의 C의 부친 망 E(2018. 7. 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3. 6.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3 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7. 3. 접수 제68981호로 2003.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는 2017. 3. 16. 배우자였던 피고와 협의이혼 합의를 작성하면서, C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8. C와 협의이혼 하였다. 피고는 C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9. 6. 5.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8412호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8. 13. 위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7. 3. 16.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11. 10. 접수 제240202호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소외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85283호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9. 9.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35,26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포함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9. 13.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유류분 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관련 유류분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C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채무 이외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11. 10. 접수 제249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8. 7. 5. 사망하였는바, 원고의 C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사망개시일인 2018. 7. 5.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그 전인 2017. 3. 16.에 이루어진 바,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하여 위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즉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유류분권을 가지게 되고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수증자에 대하여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인데,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권은 잠재적인 권리로서 일종의 기대권 내지 기대적 지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②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건에 의해 개시되는 것이어서, 사망이라는 사건의 발생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해 직접적으로 악의의 양수인에 대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목 록

1. 화성시 F 임야 2,479㎡
2. 화성시 G 임야 303㎡
3. 화성시 H 임야 204㎡
4. 화성시 I 임야 327㎡
5. 화성시 J 임야 239㎡
6. 화성시 K 목장용지 1,607㎡
7. 화성시 L 임야 14,706㎡
8. 화성시 M 임야 1,200㎡
9. 화성시 N 임야 645㎡
10. 화성시 O 임야 1,536㎡
11. 화성시 P 임야 13,896㎡
12. 화성시 Q 임야 737㎡.
13. 화성시 R 전 2906㎡
14. 화성시 S 전 3,888㎡. 끝.

